

|       |             |
|-------|-------------|
| 의안번호  | 2202033     |
| 의 퇴 인 | 김원이 의원      |
| 회 답 일 | 2024.08.08. |
| 추계번호  | 24C1888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4억 3,600만원 2030년 310억 9,400만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1,463억 2,100만원(연평균 292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연평균    |
|-------------------------------|--------|--------|--------|--------|--------|---------|--------|
| 인구감소지역 보건교사<br>(안 제15조제2항제3호) | 29,436 | 27,510 | 28,584 | 29,697 | 31,094 | 146,321 | 29,264 |

- 주 1)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교 학교수(국·공립학교 2,281개교, 사립 322개교)에서 기 배치된 보건교사(국·공립학교 1,562명, 사립학교 173명)와 기간제를 제외한 순회보건교사수(103명)를 차감한 교사 인원 수만큼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병설학교에 1명이 겸임 배치된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각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6학급 이상 학교에 각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기배치된 경우 그 인원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함  
 3) 8호봉의 보건교사가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도출하되,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립학교 국가부담금만을 합산함  
 4) '24년 7월 기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취합한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역 내 학교와 보건교사 배치현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5조<br>(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p>(제2항)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li> <li>2.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li> <li>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li> </ol> | 의무규정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15조<br>(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    | (제1호 및 제2호 농어촌 및 산촌, 제3호 인구감소지역 중 유치원)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24년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및 산촌 지역 학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sup>1)</sup> 관련 학교 통계가 부족하여 개정안에 따라 보건교사를 배치하여야 할 학교 수 추정 및 관련 비용 추계가 곤란 |
|    |                                  | ○    | (제3호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에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보건교사 관련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여, 보건교사를 '24년 현재 각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신규 배치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하고 있으며, '24년 7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총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본 추계서에서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4년 7월 현재 전체 인구감소지역 소속 학교 수에서 기배치된 보건교사와 순회교사 수를 뺀 인원 수를 신규 채용 보건교사 수로 추정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국·공립학교 2,281개

1)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농어촌지역”을 지정하여 학교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하고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많아 일률적 추계가 어려움

교에 보건교사 1,661명(학교 소속 1,562명, 순회교사 99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322개교에 보건교사 177명(학교소속 173명, 순회교사 4명)이 있음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국·공립학교에 616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사립학교에 149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함<sup>2)</sup>
  - 병설학교에 1명으로 겸임 배치된 경우 각각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6학급 이상 학교에 각 2명씩의 보건교사가 기 배치된 경우 해당학교에 기 배치된 보건교사는 2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 동안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보건교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학교 수가 증감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24.7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배치 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신규 배치되는 보건교사는 2급으로 전원 신규임용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교사 1급 자격의 경우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근무해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sup>3)</sup>, 개정안에 따라 신규임용되는 보건교사는 전원 2급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교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호봉이 승급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2급 자격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법 시행일과 추가 배치되는 보건교사에 대한 선발 공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임용되는 보건교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2)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4명의 경우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이들을 국·공립학교 보건교사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공립학교 필요 인원에서 차감함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          |                                                                                                                              |
|----------|------------------------------------------------------------------------------------------------------------------------------|
| 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
| 보건교사(2급) |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br>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 국·공립학교 보건교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의 경우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으로 나누어 산출
    - 봉급은 보건교사(2급)의 기산호봉<sup>4)</sup>에 따라 신규 배치된 해(2026년)에 8호봉으로 하며, 이후 매년 1호봉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수당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보건교사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밖에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연가보상비 등 다른 수당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관부담금은 봉급 및 수당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관부담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공무원연금) 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른 인건비 대비 물건비<sup>5)</sup>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산취득비는 보건교사를 신규 배치하는 2026년에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사립학교에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에 배치되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요(기준재정수요액)를 산정할 때 사립학교의 교원 수도 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교부받아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재정결함보조)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기준재정수요)에서 세입(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을 교부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액이 증가하여 국가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라 보건교사(2급)의 기산호봉은 8호봉

5)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물건비에는 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특근매식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재정결함보조의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고, 개정안에 따라 보건교사 추가 배치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의 세입·세출 상황 또한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사립학교에 추가 배치되는 보건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 －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추계하기 위한 보건교사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신규 배치 보건교사(2급)의 봉급 및 수당 합산액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증가분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에서 산출된 금액보다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서에서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신규 보건교사를 인구감소지역 학교수에서 기 배치된 보건교사와 순회보건교사 인원수를 차감한 값으로 하며, 국·공립학교 616명·사립학교 149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교사 추가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나누어 추계함
  - 국·공립학교의 경우 봉급, 수당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건비에 기본경비 비율(6.54%)을 곱하여 산출한 기본경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산취득비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자산취득비를 더하여 추계
  -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비용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3.706%<sup>6)</sup>)을 곱한 국가부담금 비용만을 추계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706%를 적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표 3] 국·공립학교 보건교사 추가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연평균    |
|-----------------|-----------|--------|--------|--------|--------|--------|---------|--------|
| (호봉)            |           | (8호봉)  | (9호봉)  | (10호봉) | (11호봉) | (12호봉) | —       | —      |
| 인건비<br>(A)      | 봉급·수당(a)  | 35     | 37     | 38     | 40     | 41     | 191     | 38     |
|                 | 기관부담금(b)  | 5      | 5      | 5      | 5      | 6      | 26      | 5      |
|                 | 소계(A=a+b) | 40     | 42     | 43     | 45     | 47     | 217     | 43     |
| 기본경비(B=A×6.54%) |           | 3      | 3      | 3      | 3      | 3      | 14      | 3      |
| 자산취득비(C)        |           | 5      | —      | —      | —      | —      | 5       | 1      |
| 단가 계(A+B+C)     |           | 47     | 44     | 46     | 48     | 50     | 235     | 47     |
| 신규채용 보건교사수      |           | 616    | 616    | 616    | 616    | 616    | —       | 616    |
| 합 계             |           | 29,174 | 27,266 | 28,330 | 29,433 | 30,818 | 145,021 | 29,004 |

주: 8호봉의 보건교사가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사립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연평균    |
|-------------|--|--------|--------|--------|--------|--------|--------|--------|
| (호봉)        |  | (8호봉)  | (9호봉)  | (10호봉) | (11호봉) | (12호봉) | —      | —      |
| 1인당 보수(A)   |  | 47     | 44     | 46     | 48     | 50     | 235    | 47     |
| 국가부담금 비율(B) |  | 3.706% | 3.706% | 3.706% | 3.706% | 3.706% | 3.706% | 3.706% |
| 추가배치 단가     |  | 2      | 2      | 2      | 2      | 2      | 9      | 2      |
| 신규채용 보건교사수  |  | 149    | 149    | 149    | 149    | 149    | —      | 149    |
| 합 계         |  | 262    | 244    | 254    | 264    | 276    | 1,300  | 260    |

주: 국·공립학교 신규 보건교사가 채용 단가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비율인 3.706%를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총 1,463억 2,100만원(연평균 292억 6,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초·중·고교에의 보건교사 추가 배치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연평균    |
|--------|--------|--------|--------|--------|--------|---------|--------|
| 국·공립학교 | 29,174 | 27,266 | 28,330 | 29,433 | 30,818 | 145,021 | 29,004 |
| 사립학교   | 262    | 244    | 254    | 264    | 276    | 1,300   | 260    |
| 합 계    | 29,436 | 27,510 | 28,584 | 29,697 | 31,094 | 146,321 | 29,264 |

주 1)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인구감소지역의 초·중·고교 학교수(국·공립학교 2,281개교, 사립 322개교)에서 기 배치된 보건교사(국·공립학교 1,562명, 사립학교 173명)와 기간제를 제외한 순회보건교사수(103명)를 차감한 교사 인원 수만큼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병설학교에 1명이 겸임 배치된 경우 개정안에 따라 각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6학급 이상 학교에 각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기배치된 경우 그 인원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함

3) 8호봉의 보건교사가 신규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와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소요 비용을 도출하되, 기관부담금 비율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립학교 국가부담금만을 합산함

4) '24년 7월 기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취합한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역 내 학교와 보건교사 배치현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24년 7월 기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시 인구감소지역 및 해당 지역 내 학교와 보건교사 배치현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정혜승 | 이진우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정혜승 | 02-6788-4627 | hs0387@assembly.go.kr |